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19

발의연월일: 2020. 9. 15.

발 의 자 : 야전비 · 강민정 · 노웅래

민형배 • 서영교 • 양이원영

위성곤 • 이병훈 • 이용빈

이형석 · 최종윤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8. 6. 8. 현행법의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를 제외한 물 관리정책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바 있음.

그런데, 물 관리체계의 완전한 일원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하천 정비·보조 및 유수(流水)피해 예방 등의 업무도 환경부로 이전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또한,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 주변에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, 이러한 자연재해의 이면에는 댐 등 홍수조절능력이나 하천 제방정비사업 등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 실정임.

이에 현행법에 따른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 전하여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량·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정부의 물 관 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제1항). 법률 제 호

#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 중 "환경오염방지"를 "환경오염방지, 하천"으로 한다. 제42조제1항 중 "해안·하천"을 "해안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 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 무는 환경부장관이 승계한다.
  -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제39조제1항 개정 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무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  -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관 사무 중 제39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규정된 부령은 환경부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.
- 제3조(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·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, 「하천법」,「친수구역 활

용에 관한 특별법」,「소하천정비법」,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「영산강・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고시・행정처분, 그 밖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・신고,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(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)에서 환경부장관이 승계하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환경부) ① 환경부장관은	제39조(환경부) ①
자연환경, 생활환경의 보전, <u>환</u>	<u>ই</u>
<u>경오염방지</u> , 수자원의 보전·이	<u>경오염방지, 하천</u> ,
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	
장한다.	<b>.</b>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42조(국토교통부) ① 국토교통	제42조(국토교통부) ①
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	
립・조정, 국토의 보전・이용	
및 개발, 도시·도로 및 주택	
의 건설, <u>해안·하천</u> 및 간척,	<u>해안</u>
육운・철도 및 항공에 관한	
사무를 관장한다.	<b>.</b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